

2024년 계약업무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목적

본 감사는 전부서 계약업무 추진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계약업무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 준수,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정확한 예산 집행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행위나 오류를 예방하고 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방법

가. 감사대상 : 전부서, 계약업무 추진분야

나. 감사방법 : 대면·현장 감사실시

3. 감사범위 : 2023년 1월 ~ 2024년 4월까지 추진한 업무

4. 감사중점

가. 계약업무 추진의 적정성

나.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다.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여부

라. 업무 수행시 법령·사규 준수여부 및 불합리한 관행 유무 등

5. 감사기간 및 인원

가. 감사기간 : 2024. 6. 3. ~ 6. 21. (기간중 14일)

나.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II.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원)		비고
계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시정	계	주의	계	회수	
13	-	4	2	1	5	1	-	-	-	-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일련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	<p>■ 역구내 임대시설물 수선유지비 집행 부적정</p> <p>역구내 임대시설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규 점포(상가)운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시설공사(전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커피음료자동판매기의 외관 및 기능에 이상이 있을시 ‘임차인’은 즉시 수리하여야 하고 고장 발생일로부터 3일 이상 방치할 경우 공사가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p> <p>하지만, ☆☆☆☆☆역 상가(B101) 임대차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임차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할 상가 내 조명(LED 10개) 설치를 공사 수선유지비 1,320천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역 편의시설물(커피음료자동판매기) 3개소에 미설치된 외함 접지에 대해서 ‘임차인’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 수선유지비 308천원으로 외함 접지를 설치하였음</p> <p>이는,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위해서 공사의 요구로 상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불만제기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와 커피음료자판기 ‘임차인’이 장애인으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감전) 예방을 위해서 공사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p> <p>그 결과, 상가 내 조명설비(LED 10개, 1,320천원) 및 편의시설물(커피음료자동판매기) 3개소에 미설치된 외함 접지(308천원)를 ‘임차인’ 부담으로 시행하지 않고 공사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 역구내 임대시설물에 수선유지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요구함</p>	주의

연예 연예 연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2	<p>■ 역사 제설용 영화칼슘 구입 부적정</p> <p>예정가격을 확정하고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서는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통해 조사한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p> <p>그런데, 폭설에 따른 역사 이용 승객의 미끄럼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화칼슘을 구매함에 있어 2023년 1월 6일 1차 구매 시 영화칼슘 단가를 1포당 21,340원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 1월 27일 2차 구매 시 1포당 34,100원을 적용하여 1차 구매한 단가보다 1포당 12,760원을 비싸게 구매하였음</p> <p>이는, 기존 중국산 제품은 잘 녹지 않아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2차로 구매한 영화칼슘은 국내산 친환경 물품에 해당함에 따라 단가가 상승하였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1포당 2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p> <p>그 결과, 견적가격 등을 통해 조사한 영화칼슘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단가와 2차 구매 단가(34,100원)를 비교했을 때 728천원(34,100원-25,000원 = 9,100원, 9,100원 × 80포)의 예산을 낭비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 역사 제설용 영화칼슘 구입 부적정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요구함</p>	주의
3	<p>■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제 계약 체결 방침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 누락</p> <p>감사규정시행내규 별표2 [일상감사의 범위] 제5호에 따르면“추정가격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제 계약의 체결 방침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의 범위에 포함되어있으며, 따라서 위 사항은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회부하여야 함.</p> <p>그러나 이와 관련“역구내 편의시설물 음료자판기 설치 공간 임대 입찰 공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상감사 절차를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역구내 편의시설물 음료자판기 설치 공간 임대 사업비 : 19,517천원</p> <p>【조치요구 사항】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제 계약 체결 방침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 누락 사항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요구함</p>	주의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4	<p>■ 역사 무인전자경비용역 감독업무 소홀</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중 계약의 기본원칙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 「계약업무 매뉴얼」 제2장 계약업무 처리요령에는 계약상대자는 착공(착수)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p> <p>역사 무인전자경비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계약업체는 공사에게 무인경비시설(장비) 설치공사를 용역 개시 전에 실시한 후 준공계, 시스템 계통도, 준공도면, 사진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p> <p>「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보수점검)에 반기에 1회씩 모든 기기의 전수검사내역을 공사에 서면 통보 및 제18조(보험가입)에서는 계약업체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p> <p>하지만, 역사 무인전자경비용역(2차년도) 착수계 서류에 무인경비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장비 설치에 관한 준공 관련 서류가 없으며, 기기 전수검사 결과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지 않음</p> <p>【조치요구 사항】 역사 무인전자경비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요구함</p>	주의
5	<p>■ 수의계약 내역 공개 미흡</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광주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 중 계약체결 현황에 대한 공개 사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소액/하도급 등]의 계약현황 내역에 수의계약 현황을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흡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 「계약집행기준」에 맞도록 관련 정보를 보완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람</p>	통보

연예 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6	<p>■ 준공검사 결과 통지 미흡</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p> <p>이와 관련하여 공사 「계약업무 매뉴얼」에서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개시일을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p> <p>그런데 공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준공검사 결과 통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팀에서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음.</p> <p>이에 대하여 공사 계약업무 주관팀인 ○○○○팀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절차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 준공검사 후 결과 통지를 미흡하게 하게 수행하고 있는 팀(☆☆팀, ◎◎팀, ◇◇팀, □□□□팀, △△팀, ★★팀, ◆◆◆◆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p>	통보 (교육)
7	<p>■ 소액계약 업무처리 미흡</p> <p>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추정가격 2백만원(개별 취득원가 30만원 미만) 미만으로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비유동 자산(고정자산)에 준하는 물품인지 여부와 형상이 변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에 부합할 시 소액물품으로 등재하여 불용처리 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함</p> <p>하지만, 소액 구매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물품 사다리 외 10종을 취득하였으나, 소액물품으로 등재하지 않았음</p> <p>이에, 발주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형상이 변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액물품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필요한 실정임</p> <p>【조치요구 사항】 소액 구매계약 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물품을 소액물품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p>	통보 (교육)

연예 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8	<p>■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산정 미흡</p> <p>□□팀은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정한 사항이 공정하게 입찰참여자에게 반영되도록 평가하여야 함</p> <p>그런데, □□팀은 업체능력 및 신용도 항목의 정보통신분야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최근 5년, 2개 업체는 최근 10년간 실적을 인정하여 업체별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참여의향서 상대평가 시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업체별 비교함으로써 A 업체가 B 업체보다 더 좋은 상대평가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여 상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게 변별력을 상실하게 됨. 그 결과 입찰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종점수에 오차가 있었음</p> <p>【조치요구 사항】</p> <p>□□팀은 사업수행능력 시 평가기준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구함</p>	통보 (교육)
9	<p>■ 행사운영비 집행 업무 미흡</p> <p>「광주도시철도공사 2023년도 예산집행기준 알림」(○○○○팀-286호 (2023. 1. 11) [붙임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한, 「2023년도예산집행기준」(○○○○팀-248호, 2023.01.10.)에 따라 소규모 비품 구입 등은 소모품비로 집행하고,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p> <p>그런데, ◎◎◎◎팀, ◇◇◇◇팀에서는 문화지하철 운영 관련 각종 물품 구매 시와 품질/환경시스템 갱신심사·사후심사 다과 구매 시 행사운영비로 집행함.</p> <p>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p> <p>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른 집행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p>	통보 (교육)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0	<p>■ 정책연구용역 운영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p> <p>「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에서 지방공기업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근거를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는 공사 회계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정책연구용역 운영내규」 제14조 제1항은“연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사규)인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회계규정」에서 정한 「지방계약법」 준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p> <p>「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단순히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 공공기관이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 유사한 법령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방계약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내부 구성원의 혼란 방지 등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p> <p>【조치요구 사항】 정책연구용역 운영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p>	개선
11	<p>■ 광고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 개정</p> <p>「광고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 내규」 제5조(계약제한)에서는 계약상대자 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그 중‘금치산’과‘한정치산’은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기존 ‘금치산’ 과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바 사규 개정이 필요함</p> <p>또한, 신규 임대 공고에 계약 제한내용이 없어 낙찰자 결정 시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연장)계약 시 계약제한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라며, 사규에서 정한 계약 제한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p>	개선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2	<p>■ 명도소송 보완을 위한 제소전 화해제도 운영</p> <p>제소(提訴)란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으로 제소전 화해란 단어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 즉,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간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송전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소 제기전에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제소전 화해라고 함</p> <p>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 자체로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p> <p>이러한 제소전 화해제도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임차인간 명도에 관한 사항을 제소전 화해조서로 작성되었다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절차(법원)를 시행할 수 있어 소송비용 절감 및 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p> <p>다만, 이러한 제소전 화해제도가 이전부터 일부 공공기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화해조서 의무 작성 약관은 임차인의 부당한 계약조건에 해당되어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된 점이 있는 바 임대차 물건, 명도 발생 위험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명도소송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인 제소전 화해절차가 존재하므로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임대차 계약에 활용</p>	권고
13	<p>■ 하도급 공개 현황 누락</p> <p>‘「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총칙 8. 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라 광주 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 중 계약체결의 현황에 하도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고, 상세 내역으로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계약체결 현황 공개 내역 중 [기타현황] 부분에서 2023년 하도급 계약현황 공개가 누락되어 있었음.</p> <p>이에 △△△△팀은 감사기간 중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 정보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p> <p>(조치완료 : △△△△팀-5360호, 2024.6.21.)</p> <p>【조치요구 사항】</p> <p>공개 누락되어 있던 하도급 관련 정보를 감사기간 중 인지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p>	현지 시정